

제417회 정례회

'24. 6. 11.(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3. 제안사유

- 장기간 동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자원분) 세율에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를 반영하여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 인상(안 제11조)

- (현행) 표준세율 ※ 2원/10m<sup>3</sup>

→ (개정)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※ 3원/10m<sup>3</sup>

○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 인상(안 제15조제1항)

- (현행) 표준세율 ※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
→ (개정)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※ 광물가액의 1천분의 7.5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「지방세법」 제146조는 지역자원시설세<sup>5)</sup>에 대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규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.
-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1992년 신설되었고, 이 중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은 2000년에 인상,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은 2006년에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.
- 현행 「충청북도 도세조례」는 제11조와 제15조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물가상승이나 소득증가 등에 대한 반영 없이 장기간 동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.
- 이에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---

5)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·보전, 환경보호·개선, 안전·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,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(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)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(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)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(건축물, 선박)로 구분됨(지방세법 제141조, 제142조)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1조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% 인상, 안 제15조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% 인상 규정함.
- 「지방세법」 제146조는 제1항은 특정자원분(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)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고, 법 제14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,
-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을 표준세율의 50% 인상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탄력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므로 타당함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이 약 20여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되어 온 바, 세율 인상을 통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현실화하고,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하수의 세율 인상을 제외한 것은 지하수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